

안전보건관리

기업명	(주)로보메이션
문서번호	2022-S-02
제·개정일	2022.07.01
담당부서	경영지원
담당자	김정우 이사

< 목 차 >

목차명		제 · 개정일	페이지
I.	안전보건경영 방침	2022.07.01	3
II.	안전보건관리 규정	2022.07.01	4
III.	안전보건경영 조직도	2022.07.01	9
IV.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2022.07.01	17
V.	안전보건 교육	2022.07.01	20

(주)로보메이션	I. 안전보건경영 방침	제·개정일
		2022.07.01

□ 안전보건경영 목적

(주)로보메이션은 안전보건경영을 지속가능경영의 중점으로 인식하여, 임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는 작업환경 및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 안전보건경영 방침

- ▷ 임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및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 ▷ 안전보건 관련 법규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명확히 인지하고 철저히 준수한다.
- ▷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하여 사전에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및 제거함으로써 기업의 모든 활동영역에서 안전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임직원의 안전보건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를 형성한다.
- ▷ 임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활동을 수립 및 시행한다.
- ▷ 안전사고 또는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주)로보메이션	II.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개정일
		2022.07.0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주)로보메이션(이하 회사)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회사의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령 및 규칙 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6.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으로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되는 등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7.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4조(안전보건경영방침) ① 회사는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해야 하며, 이 방침에 안전보건과 관련된 목표, 성과개선의 의지를 분명히 제시하고 모든 구성원에게 공표되어야 한다.

② 안전보건방침은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최고경영자의 서명과 시행일을 표기하여 기업 내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안전보건정책이 사회적 흐름이나 기업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수정하여야 한다.

제5조(재해예방 의무) 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효율적인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의 재해예방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사

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 관련 법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나. 작업환경 및 근로환경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식별 및 조치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 안전보건에 관한 규정 및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근로자

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 관련 법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6조(관리감독자) 업무상 그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소관부서의 장을 관리감독자로 임명하며, 그 구체적인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장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2.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
5.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7조(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① 회사는 안전보건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담당자 등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의 실행계획 수립 시 소방교육(또는 가스·전기·교통 관련법)을 포함한다.

③ 안전·보건교육은 회사 내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이하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이라 함)과 관리책임자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④ 안전보건교육은 교육대상과 교육시기에 따라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물질안전보건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한다.

⑤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은 직무교육으로써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⑥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설문·시험 등으로 교육성과를 측정하여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신규채용자 교육) ① 회사에 신규로 채용된 직원에 대하여는 담당업무 종사 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 시간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신규채용자에 대한 교육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2. 사고 및 재해 발생경위, 사고유형 및 예방 등에 관한 사항
3. 당해 설비 기계 및 기구의 안전점검 방법에 관한 사항
4.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5.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9조(정기교육) ① 안전보건 정기교육은 소관부서에서 모든 소속 직원들에게 업무 수행상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매분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 시간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기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2. 직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3. 작업공정의 유해 위험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 개선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5. 표준안전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6. 안전보건 점검 및 보호구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7. 안전사고 사례 및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8. 무재해 추진실적 및 기법에 관한 사항
9. 제품 및 원재료의 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10. 방호조치 및 방호설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
11. 안전표지 및 주의에 관한 사항
12. 기타 현장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직무교육) 다음 각 호의 관리책임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 시간과 시기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제11조(안전보건교육강사) ① 안전보건교육 강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2. 관리감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회사에서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 확인서를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기록·보존) 회사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또는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장 안전보건관리

제13조(안전보건경영계획 수립 및 실행) ① 회사는 안전보건관리 대상 사업 및 시설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안전보건경영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안전보건경영보고서 작성 및 공시) 회사는 당해 연도 안전보건경영계획의 주요내용 및 전년도 안전보건경영계획에 대한 점검내용, 전년도 재해현황 등을 포함하여 안전보건경영보고서를 작성 및 공시하여야 한다.

제15조(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회사는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을 양도, 대여, 설치, 사용하거나, 양도·대여를 목적으로 진열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표준작업안전수칙 작성 및 준수) ① 작업부서에서는 공정별·작업별·설비별로 표준작업안전수칙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표준작업안전수칙에 따라 작업하는 등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작업중지 등) 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임직원을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안전보건담당부서 또는 산업재해담당부서(이하“담당부서”라 한다)에 보고하고, 담당부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임직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비상조치계획) 회사는 위험성 평가 등에서 도출된 중대재해, 화재폭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9조(피난 및 대응훈련) 회사는 비상사태 시나리오별로 정기적인 교육을 포함한 피난 및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대응훈련 후 성과를 평가하여 필요에 따라 개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제20조(비상연락시스템 구축) 회사는 비상사태 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근골격계질환예방) ①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하여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임직원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시작 전 건강제도 및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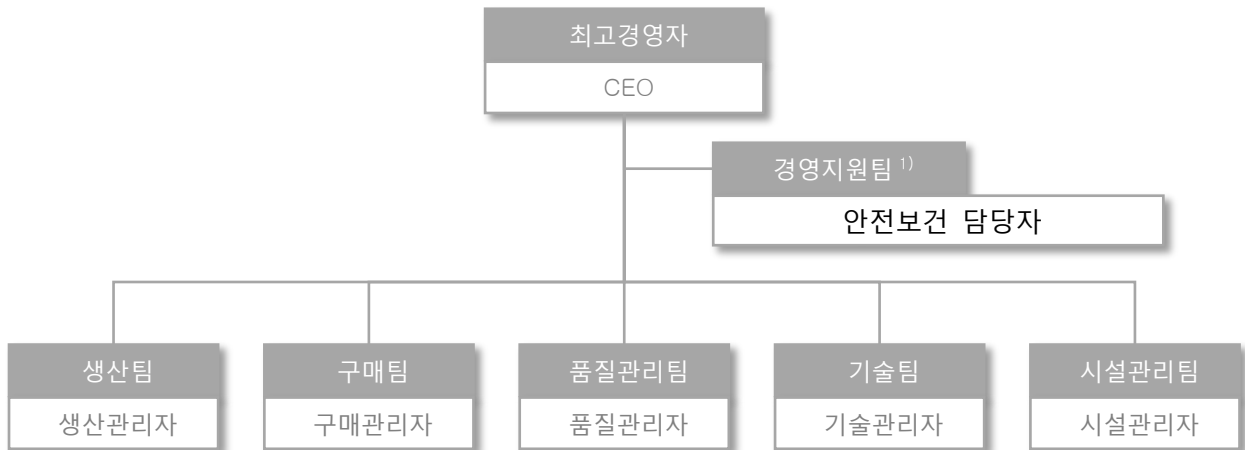
③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 임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요양을 받도록 하며, 요양을 마치고 복귀한 경우 해당 임직원과의 협의 하에 가급적 다른 업무로 전환하도록 하며, 전환이 어려울 경우 자세 및 작업환경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주)로보메이션	III. 안전보건경영 조직도	제·개정일
		2022.07.01

※ 기업의 규모 또는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경영 조직의 구성 수준을 결정함.

□ 안전보건 담당자 지정

▷ 조직도



▷ 담당 업무

부서	안전보건 업무
경영지원팀 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관리규정 수립 및 개정 • 안전보건활동 계획의 수립 및 실행 • 안전보건활동 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 위험성 평가 및 사전 예방 조치 • 안전보건 교육 등

□ 안전보건 관리감독자 지정

▷ 조직도



▷ **담당 업무**

- (주)로보메이션은 현재 관리감독자만 지정 대상

구분	안전보건 업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재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건강관리 • 산재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산재 통계 기록·유지, 위험성평가 실시 • 안전장치·보호구 적격품 여부 확인 • 근로자 위험, 건강장해 방지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급인과 수급인 대상의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작업장 순회점검 •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제공 및 실시 확인 • 위생시설의 설치 및 제공
관리감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작업) 기계·기구 또는 설비 점검, 작업장 정리정돈 • 작업복·보호구·방호장치 점검, 교육·지도 • 산재 보고 및 응급조치 •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에 대한 협조 • 위험성평가 관련,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안전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성평가, 위험기계·기구, 안전교육, 순회점검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 산재 발생 원인 조사·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 산재 통계 유지·관리·분석 등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보건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성평가, 개인 보호구, 보건교육, 순회점검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 산재 발생 원인 조사·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 산재 통계 유지·관리·분석 등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응급처치 등에 대한 의료 행위(의사 또는 간호사에 한함) • MSDS 게시·비치, 지도·조언 및 보좌
산업보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진단 결과 검토 및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 건강장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조치

※ 안전보건 업무담당자의 선임 기준은 업종별로 상이

(주)로보메이션	IV.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제·개정일
		2022.07.01

□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기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영역별 주요 사항의 만족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관리체계의 완전성을 점검함.

영역	핵심 평가요소	평가척도
경영자 리더십	• 기업은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목표를 정하고 있는가?	Y/N
	• 기업은 안전보건에 필요한 자원(인력·시설·장비)을 적절히 배정하고 있는가?	Y/N
	• 기업은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가?	Y/N
근로자의 참여	• 기업은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가?	Y/N
	• 기업은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	Y/N
	• 기업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있는가?	Y/N
위험요인 파악	• 기업은 위험요인에 따른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있는가?	Y/N
	• 기업은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를 조사하고 있는가?	Y/N
	• 기업은 위험기계·기구·설비 등을 파악하고 있는가?	Y/N
	• 기업은 유해인자를 파악하고 있는가?	Y/N
	• 기업은 위험장소 및 작업형태별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있는가?	Y/N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 기업은 위험요인별 위험성을 평가하고 있는가?	Y/N
	• 기업은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는가?	Y/N
	• 기업은 임직원 및 협력사 근로자에게 위험 예방을 위한 보호구를 제공하고 있는가?	Y/N
	• 기업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는가?	Y/N
	• 기업은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	Y/N

영역	핵심 평가요소	평가척도
비상조치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은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는가? 기업은 '재해 발생 시나리오'별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기업은 조치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훈련하고 있는가? 	Y/N Y/N Y/N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은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선정하고 있는가? 기업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시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Y/N Y/N
평가 및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은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고 있는가? 기업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있는가? 기업은 발굴된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고 있는가? 	Y/N Y/N Y/N

※ 출처 : 고용노동부(2021),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p13

□ 점검결과 및 조치 양식

점검일자	영역	점검결과	조치사항
2022.07.01	위험요인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설비에 대한 위험요인이 파악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설비에 대한 위험요인을 작업형태별로 파악
2022.07.01	평가 및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보건경영방침과 안전보건 목표가 일치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보건 목표와 목표별 KPI 설정

□ 산업재해 현황 관리

▷ 재해자 수 및 산업재해율 관리

구분	Y-3년	Y-2년	Y-1년 (최근 결산연도)
산업재해자 수 ¹⁾	0	0	0
중대산업재해자 수 ²⁾	0	0	0
중대시민재해자 수 ³⁾	0	0	0
상시근로자 수 ⁴⁾	9	9	8
산업재해율 ⁵⁾	0%	0%	0%

※ 용어 설명

구분	관련 용어 설명
산업재해 ¹⁾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중대산업재해 ²⁾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또는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중대시민재해 ³⁾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또는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상시근로자 수 ⁴⁾	상시근로자를 비롯하여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를 포함함.
산업재해율 ⁵⁾	1년간 발생한 재해자수와 연평균근로자수를 통해 산업재해율을 산정 $\text{산업재해율}(\%) = \text{재해자수} / \text{상시근로자수} * 100$

(주)로보메이션	V. 안전보건 교육	제·개정일
		2022.07.01

□ 안전보건교육훈련 계획

▷ 교육훈련 목적

안전보건교육은 경험부족, 인지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임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실시한다. 교육훈련은 그 목적에 따라 대상자와 교육 방법을 구분하여 실시한다.

▷ 교육훈련 종류

교육 구분	교육 대상자	법정 교육 시간
정기교육	전 임직원	분기별 3 hr
신규입사자 교육	신규입사자 전원	8 hr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해당 작업 담당자	2 hr

□ 교육훈련 연간 시행 계획

교육 구분	교육 내용	교육방법	교육 일자	교육시간	교육대상	
정기 교육	1분기	산업안전보건법령 체계 및 주요내용의 이해	온라인		2시간	전직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	온라인	-	2시간	전직원
		미세먼지 건강관리	온라인	-	2시간	전직원
	2분기	작업장 안전문화와 안전의식 향상	온라인	-	2시간	전직원
		감정노동의 이해와 관리방안	온라인	-	2시간	전직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온라인	-	2시간	전직원
	3분기	일터에서의 감염병 예방대책	온라인	-	2시간	전직원
		직무 스트레스 관리 및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방안	온라인	-	2시간	전직원
		전기안전관리와 전기재해 예방	온라인	-	2시간	전직원
	4분기	유해·위험물질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온라인	-	2시간	전직원
		사무실 근로자를 위한 작업환경관리 및 건강관리	온라인	-	2시간	전직원
		위험성 평가의 이해 및 주요 사례(업종별)	온라인	-	2시간	전직원
채용 시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온라인	채용 후	8시간	입사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작업장 안전문화와 안전의식 향상 • 전기안전관리와 전기재해 예방 • 근로자 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현장교육	작업 배치 전	2시간	해당 작업자	
직무교육						

□ 안전보건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온라인 교육 시스템 및 수료증으로 대체가능)

<h1 style="margin: 0;"><u>안전보건교육일지</u></h1>		결 재	담당	부장	대표
일시 : 20 ... (: ~ :) 작성자 :					
교육과정	가. 정기교육 나. 채용 시의 교육 다.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라. 특별교육 마. 기타()교육 ※ 교육과정 및 교육대상별 교육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8] 참조				
교육인원	구 분	계	남	여	교육 미 실시 사유
	교육 대상자 수				
	교육 실시자 수				
	교육 미 실시자 수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 강사명 및 장소	직 책	성 명	교육장소		비 고
특이사항					

안전보건교육 참석자 명단

순번	부서명(직책)	성 명	서 명	순번	부서명(직책)	성 명	서 명
1				16			

2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